

1 개념 및 필요성

-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(홈페이지 등)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
 -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
 -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

2 법적 근거

- 지방재정법 제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) 제3항

3 제도 도입 추진경과

- '94년부터 「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」 운영
 -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,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·세출예산의 집행상황,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(구.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)
 -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, 공개방법,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
- '06년부터 「지방재정 공시제도」 도입
 - 재정공시 대상, 공시방법, 시기,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
 - 기존 「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」의 한계를 극복하고, 주민에 대한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

4 공시의 주체 : 지방자치단체의 장

5 공시의 시기 및 작성 :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

- 정기공시 : 매년 2월(예산공시), 8월(결산공시) 총 2회 실시
- 수시공시 :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 시 실시

6 2021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항목

자치단체 재정공시(21개)		행정안전부 통합공시(19개)	
분류	세부항목	분류	세부항목
예산규모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입예산 • 세출예산 • 지역통합재정통계 	예산규모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입예산 • 세출예산 • 지역통합재정통계
재정여건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정자립도[당초예산] • 재정자주도[당초예산] • 통합재정수지[당초예산] 	재정여건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정자립도[당초예산] • 재정자주도[당초예산] • 통합재정수지[당초예산]
재정운동 계획 (1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기지방재정계획 • 성인지예산 •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• 성과계획서 • 재정운동상황개요서 • 국외여비 편성현황 • 행사·축제경비 편성현황 •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체장·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-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•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•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•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- 공무원 일·숙직비 - 통장·이장·반장 활동보상금 	재정운동 계획 (9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기지방재정계획 • 성인지예산 비율 • 재정운동상황개요 • 국외여비 편성현황 • 행사·축제경비 편성현황 •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체장·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-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•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•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• 1인당 경비 편성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- 공무원 일·숙직비 - 통장·이장·반장 활동보상금
재정운동 성과 (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(세출효율화) •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(세입확충) •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•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	재정운동 성과 (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(세출효율화) •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(세입확충) •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•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

7 공시방법

-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, 편의성, 시청률,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
-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,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, 지역방송, 시·군정지(반상회보) 등
 -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
 -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시수단 추가 활용
 -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,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·군정지(반상회보)를 비치
 -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,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

II 지방재정공시 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

- 법적근거
 - 지방재정법 제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) 제3항
 -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
- 위원회의 구성
 -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
 -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 초과 불가
 - 민간위원 :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
 - 공무원 :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
- 위원회의 기능
 - 재정공시제도 운영 관련 공시방법, 공시내용 등에 대한 심의
 - 특수공시사항 선정방법, 절차 등 준수여부에 대한 심의
 - 기타 자치단체 조례에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